HILLS.AVENUE

힐스 에비뉴 죽림더파우드 A2BL 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

현대건설

1 공급대상

■ 공급위치 및 규모 : 전라남도 여수시 죽림1지구 내 A2BL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2개동 총 25개 호실)

■ 용도 : 힐스 에비뉴 죽림더파우드 A2BL 아파트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전남개발공사, 현대건설(주), (하)죽림산개발 / 현대건설(주), (하)죽림산개발

■ 공급면적 및 공급예정 가격(최저 입찰 예정가격)

1) 호실별 공급 예정 가격

(단위 : ㎡, 천원, VAT 별도)

구분	층	호수	면 적				공급 예정 가격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합계
A동	지상1층	101	52.0800	9.8703	61.9503	38.6006	79,260	320,950	400,210
		102	50.4000	9.5519	59.9519	37.3554	75,170	304,390	379,560
		103	50.4000	9.5519	59.9519	37.3554	75,170	304,390	379,560
		104	50.4000	9.5519	59.9519	37.3554	75,170	304,390	379,560
		105	50.4000	9.5519	59.9519	37.3554	74,400	301,260	375,660
		106	50.4000	9.5519	59.9519	37.3554	74,400	301,260	375,660
		107	45.4156	8.6072	54.0228	33.6611	68,420	277,080	345,500
	지상2층	108	46.8300	8.8753	55.7053	34.7094	70,550	285,680	356,230
		109	46.8300	8.8753	55.7053	34.7094	72,000	291,560	363,560
		201	43.2450	8.1999	51.4409	32.0523	64,200	137,450	201,650
		202	41.8500	7.9315	49.7815	31.0183	62,170	132,990	195,100
		203	41.8500	7.9315	49.7815	31.0183	62,170	134,390	197,160
		204	41.8500	7.9315	49.7815	31.0183	62,770	134,390	197,160
		205	41.8500	7.9315	49.7815	31.0183	63,400	135,730	199,130
		206	41.8500	7.9315	49.7815	31.0183	63,400	135,730	199,130
	지상3층	207	36.9696	7.2567	44.2263	27.5205	54,610	223,720	278,330
		208	42.0000	8.1445	50.1445	30.6972	62,060	254,220	316,280
		209	42.0000	8.1445	50.1445	30.6972	62,060	254,220	316,280
		210	42.0000	8.1445	50.1445	30.6972	62,060	254,220	316,280
		211	42.0000	8.1445	50.1445	30.6972	62,060	254,220	316,280
		212	42.0000	8.1445	50.1445	30.6972	62,060	254,220	316,280
		213	42.0000	8.1445	50.1445	30.6972	61,420	251,610	313,030
		214	42.0000	8.1445	50.1445	30.6972	62,060	254,220	316,280
B동	지상1층	101	52.0800	9.8703	61.9503	38.6006	154,430	625,340	779,770
	지상2층	102	50.4000	9.5519	59.9519	37.3554	142,550	577,240	719,790
		103	46.8300	8.8753	55.7053	34.7094			
		104	46.8300	8.8753	55.7053	34.7094			
	지상3층	201	43.1850	7.9315	49.7815	31.0183	125,540	268,780	394,320
		202	41.8500	7.9315	49.7815	31.0183			
		203	41.8500	7.9315	49.7815	31.0183	126,800	271,460	398,260
		204	41.8500	7.9315	49.7815	31.0183			
	지상4층	205	41.8500	7.9315	49.7815	31.0183			
		206	41.8500	7.9315	49.7815	31.0183			
	지상5층	101	42.0000	3.1415	45.1415	30.6972	125,370	513,590	638,960
		102	42.0000	3.1415	45.1415	30.6972			
	지상6층	103	42.0000	3.1415	45.1415	30.6972	124,090	508,370	632,460
		104	42.0000	3.1415	45.1415	30.6972			

2) 근린생활시설 공급 예정 가격

(단위 : ㎡, 천원, VAT 별도)

구분	층별	호수	면 적				공급 예정 가격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대지비	건축비	합계
A동	1층	101	52.0800	9.8703	61.9503	38.6006	154,430	625,340	779,770
	2층	102	50.4000	9.5519	59.9519	37.3554	142,550	577,240	719,790
		103	46.8300	8.8753	55.7053	34.7094			
		104	46.8300	8.8753	55.7053	34.7094			
	3층	201	43.1850	7.9315	49.7815	31.0183	125,540	268,780	394,320
		202	41.8500	7.9315	49.7815	31.0183			
	4층	203	41.8500	7.9315	49.7815	31.0183	126,800	271,460	398,260
		204	41.8500	7.9315	49.7815	31.0183			
B동	5층	101	42.0000	3.1415	45.1415	30.6972	125,370	513,590	638,960
		102	42.0000	3.1415	45.1415	30.6972			
	6층	103	42.0000	3.1415	45.1415	30.6972	124,090	508,370	632,460
		104	42.0000	3.1415	45.1415	30.6972			

■ 공통사항

1) 상기 예정가격은 토지보상 관련 건물부분(VAT별도의 합계금액)이며, 계약금액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입찰 후 낙찰가격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낙찰자 부담임.

2)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의 10%를 낙찰가격에 더해져 계약됨.

3)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의 일부임.

4)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용면적 정정,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상기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하여 상기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대비 증감분에 대한 공급 정산하기 이루어짐.

5) 상기 예정가격은 각 호실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6) 분양대금 납부일정표 상 지연 숫자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니다.

7) 전금은 입찰참가자 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만료일 이전에 입찰할 경우는 입찰 전자지자 전금을 완납하여야 함니다.

■ 호실별 시설용도(구조적 시행령, 별표1)

시설용도		권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 잡화, 의료, 약구, 서적,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00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300㎡ 미만) · 이용,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수선점 및 장의사 등 공공편의 봉사제공 관련 시설 · 보건의 관한 의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500㎡ 미만)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공작, 영화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일반인, 500㎡ 미만), 종교집회장(500㎡ 미만) ·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300㎡ 미만) · 학원(자동차 운전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500㎡ 미만) · 독서실, 기원 / 제조업전용, 에어로빅장, 볼링장, 놀이형시설(50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단, 정의사·종합편제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가상현실체험시설·다중이용업은 제외하고 관련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및 그 시행령의 시설로서 제외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 해당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해당 용도 최대 면적을 초과한 경우 주택 건축물대장에 타 용도로 분류될 수 있음.

※ 상기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는 건축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 변경 가능.

※ 업종별 면적 제한은 단지 내 상가(근린생활시설) 개별 전체 필히 확인 바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6호 및 동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다음 표의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외됨.

| | |---|---|---|---|---|---|---|---|---|---|